

# ‘신촌, 파랑고래’ 장소사용 운영지침

## I 운영원칙

- 청년문화 거점공간 ‘신촌, 파랑고래’에 부합하는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
- 시민불편, 민원 발생 우려 행사 등은 내용 변경 조건으로 승인
- 개인 및 단체의 상업행위 행사 금지
- 서대문구 주최·주관 행사 중 판매행위가 포함된 경우, 행사계획수립 시 구청장 결재 완료 필수
- 참가비 또는 일부 판매행위가 포함 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
  - ① 공익 목적의 행사임과 동시에
  - ② 서대문구청 내 연계부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
  - ③ 발생 된 수익금은 연계부서를 통해 기부 및 후원금으로 사용
- 기타 특정목적을 위한 행사(정당행사, 종교집회, 특정단체 집회 등) 금지

## II 기본운영사항

### ■ ‘신촌, 파랑고래’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

- ‘신촌, 파랑고래’가 주최·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행사
- 서대문구가 주최·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행사
- 서울특별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·주관 또는 후원하는 문화행사
- 민간(단체·개인) 주최·주관 시, 공익목적의 문화행사
-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### ■ ‘신촌, 파랑고래’ 장소사용 제외 대상

- 청년문화 거점공간 ‘신촌, 파랑고래’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경우
- 공공질서 문란행위,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행위
- 특정 정당·종교·단체 등의 정치 및 홍보 행위
- 특정단체, 기업 및 개인의 영리 목적을 위한 행위
- 공연, 콘서트, 캠페인 등의 문화행사 진행 중 행사와 결합하여 영리를 취하는 행위
- 음식조리 및 판매 등 지역 상권을 침해하는 행위
-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### ■ 행사의 제한

- ‘신촌, 파랑고래’ 사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추후 행사 제한

### III

## 세부운영사항

#### ■ 장소현황

구분	명칭 및 용도	면적(m <sup>2</sup> )	장비 및 시설
지상	3층	사무실, 꿈이룸홀	음향, 영상장비, 테이블, 의자, 사무기기 등
	2층	웰컴라운지, 파랑고래실	회의용 테이블, 의자, 냉장고 등
	1층	개방화장실, 시설관리실 고래마당	사무기기, 조명 등
지하	1층	바닷속 연습실	음향장비, 테이블, 의자 등
합계		808.21	

#### ■ 장소사용 신청절차

- 신청방법 : 대관신청서 또는 공문(행사계획서 첨부)에 의함
  - ▷ 지정 신청서 및 기타 필수 서류 이메일 접수(홈페이지 내 담당자 이메일 주소 기재)
- 신청기간
  - ▷ 사전접수 : 전월 15일까지 (20일 발표 및 등록)
  - ▷ 수시접수 : 당월 사용일 10일전까지

#### ■ 장소사용 승인 절차 및 취소

##### ○ 승인절차



##### ○ 승인 취소·정지 대상

- ▷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- ▷ '신촌, 파랑고래'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- ▷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
- ▷ '신촌, 파랑고래'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

## ■ 승인 조건 등 위반 시 제재사항

위반 횟수	적용사항	비고
1회	3개월 간 사용 제한	[위반기준] 1. '신촌, 파랑고래' 사용지침 2. '신촌, 파랑고래' 사용 준수사항 3. 승인조건
2회	6개월 간 사용 제한	
3회 이상	1년 간 사용 제한	

## ■ 장소사용 유의사항

### □ 공통사항

- ▷ '신촌, 파랑고래' 내에서 상품·기업 홍보 및 광고, 각종 모금행위(목적불분), 물건판매 등 상업(영업)행위, 조리, 정당·종교·집회 행위는 엄격히 제한
- ▷ 행사주관자 '신촌, 파랑고래' 사용승인 시간 준수(사용승인시간 임의적 연장 절대 금지)
- ▷ 승인 받은 목적 외 행사는 불가하며, 제3자에게 사용을 양도·양수(전대)할 수 없음
- ▷ 시설물은 공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 (이동로 확보 필수)
- ▷ 『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』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록 위 시설물 등 설치를 금함
- ▷ 시설물·철거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
  - ⇒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, 서대문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
- ▷ '신촌, 파랑고래' 내 시설물 원형 변경 금지. 다만, 행사와 관련 된 무대 및 부스 설치 등 설치 시에는 설치 전 '신촌, 파랑고래'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, 행사 종료 후에는 바로 철거
  - ⇒ 당일 설치 및 당일 철거 원칙
  - ⇒ 부스·무대 등 공작물을 설치 시 못, 앙카 등 바닥에 고정 장치 이용을 금지
  - ⇒ '신촌, 파랑고래' 내 시설물 파괴 등 훼손된 경우 행사 주최자가 원상복구 책임
- ▷ 행사관련 현수막 등 홍보물 등은 사전에 '신촌, 파랑고래'에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
- ▷ '신촌, 파랑고래'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, 행사 물품과 관련 된 차량은 물품 하역 후 즉시 이동조치
- ▷ 음향기기 설치 시 최대 출력기준의 소음 영향을 검토하여 과도한 사용 금지
  - ⇒ 행사장 및 주변의 시민·상인 등에게 행사로 인한 불편을 주지 말아야하며, 음향소음 과다 발생 및 야간 조명(강한조명) 등으로 인해 집단민원 발생(우려 시) 임의로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음
- ▷ 행사 시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련 보험 가입 및 요원 배치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함
  - ⇒ 사용자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지며,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
- ▷ '신촌, 파랑고래'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견인조치 될 수 있음
- ▷ 1회용품 사용 자제(1회용컵, 플라스틱 빨대, 비닐봉투 등)
- ▷ 청소 및 오물수거는 행사종료 후 즉시 시행해야하며,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분리수거 후 반출
- ▷ 반입한 각종 기자재 및 비품, 홍보물 등은 행사 종료 동시에 남김없이 즉시 반출
- ▷ 행사 종료에 따른 시설물 철거 완료 시까지 담당직원 현장 정리
- ▷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원 사항은 행사 주최/주관 책임하에 처리